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 관계

국세청
2026년 7월

제도 개요

▶ 소액 수입화물의 양도에 관한 과세제도 개편 (P 2)

사업자가 통신판매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자산의 양도 중 개별 자산의 대가가 1만 엔(세금 제외) 이하인 경우(이하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라 함)에는 해당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 제도 (P 3)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려는 사업자로써, 해당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화물을 다른 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게 하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받은 사업자를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라고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물 중 해당 과세화물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양도하는 특정 소액자산에 해당함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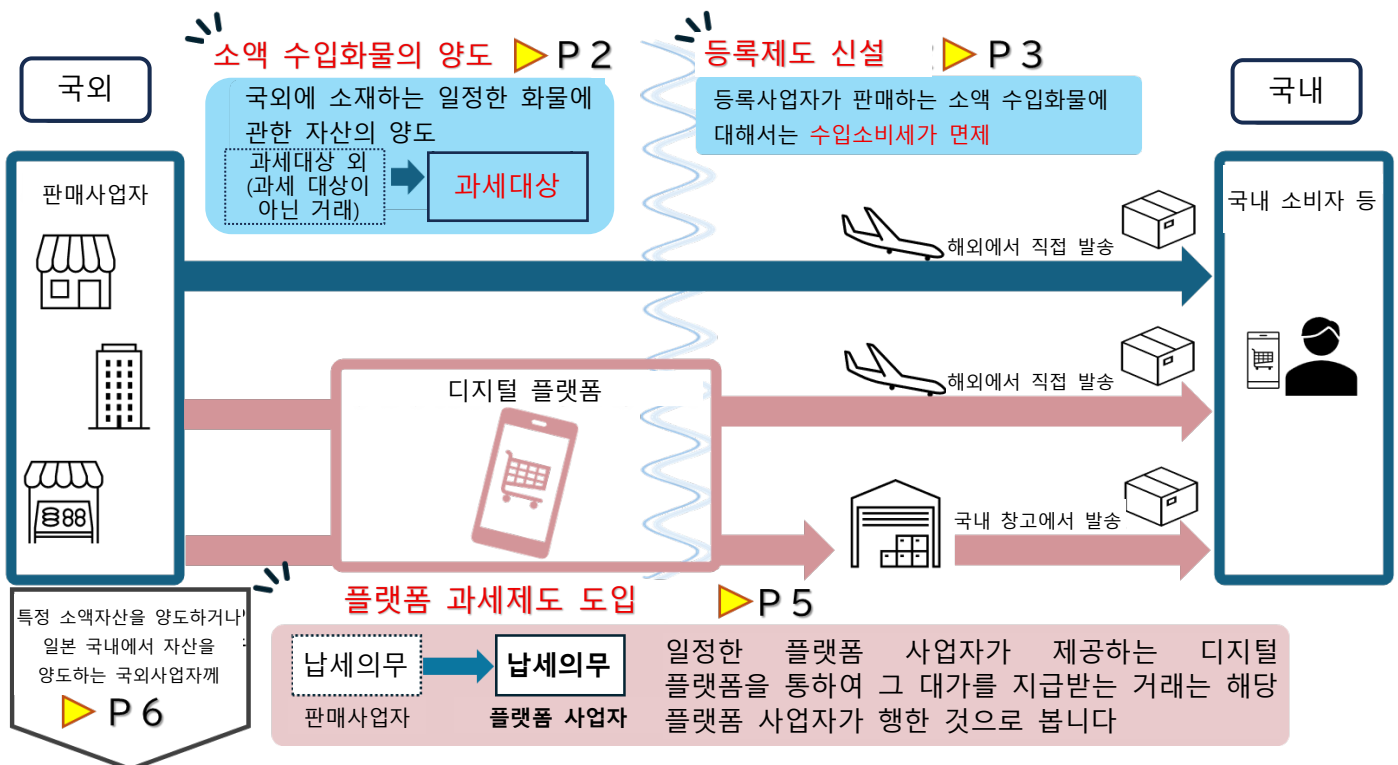
▶ 플랫폼 과세제도 (P 5)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일본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를 제2종 플랫폼 사업자라고 합니다.

제2종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 중, 그 대가를 해당 제2종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2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플랫폼 과세).

【적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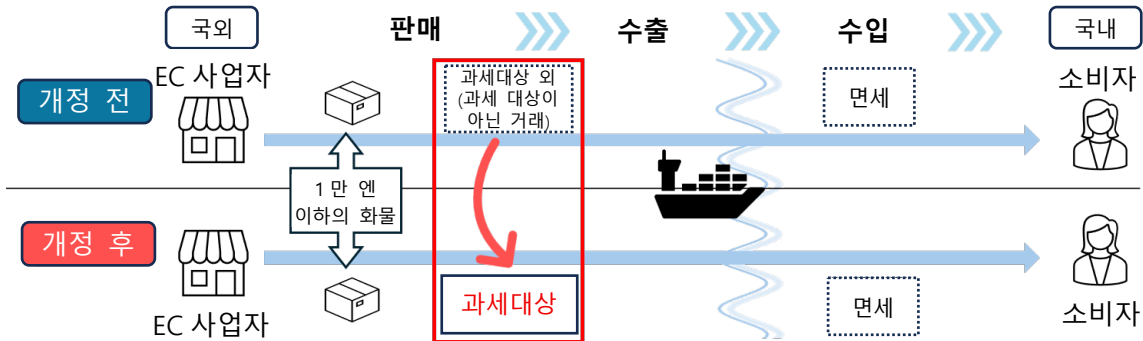
2028년 4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소액 수입화물의 양도에 관한 과세제도 개편

◆ 개요

사업자가 통신판매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자산의 양도 중 개별 자산의 대가가 1 만 엔(세금 제외) 이하인 자산의 양도(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인지 국외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세 면세사업자는 제외).



◆ 특정 소액자산 양도의 대가 금액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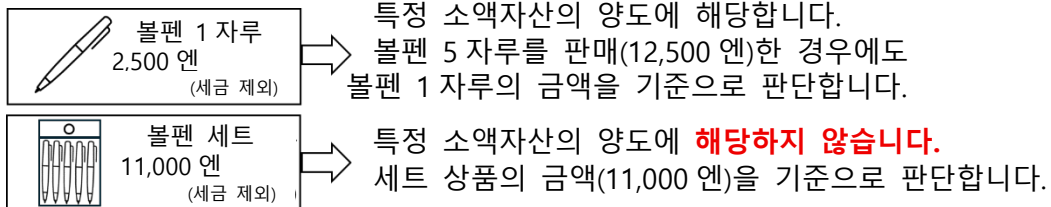
● 개별 자산의 대가 금액에 관한 판단 기준

개별 자산의 대가 금액이 1 만 엔(세금 제외) 이하인지는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최소 판매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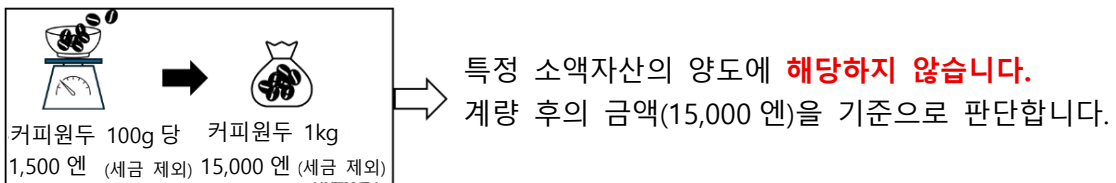
볼펜을 낱개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여러 자루를 함께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된 볼펜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볼펜 1 자루의 대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여러 자루의 볼펜을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볼펜 1 자루당 금액이 아니라 세트 상품 전체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2

100 그램당 1,500 엔인 커피 원두를 1 킬로그램 판매한 경우에는 계량 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송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특정 소액자산 양도의 대가 금액에는 별도로 징수하는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 대가 금액과 배송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 면세점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를 하는 사업자의 2028 년 4 월 1 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기간 또는 특정기간의 개시일부터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기준기간 또는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플랫폼 과세대상인 거래는 제외)이 1,000 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면세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제도

개요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려는 사업자로, 해당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화물을 다른 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게 하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이 등록을 받은 사업자를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라 하며,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과세화물 중 해당 화물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양도하는 특정 소액자산에 해당함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등록 제도

등록 요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특정 국외사업자※1	특정 국외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소비세 과세사업자일 것	○	○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려는 사업자로, 해당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화물에 대해 다른 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게 하려는 사업자일 것	○	○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였을 것	○	○※2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 년이 경과하였을 것※3	○	○
소비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하였을 것	○	○
소비세에 관한 세무대리 권한을 가진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	○	-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해당 체납액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

※1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소, 사업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본 국내에 두지 않은 국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국제통칙법 제 117 조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3 일정한 취소 사유로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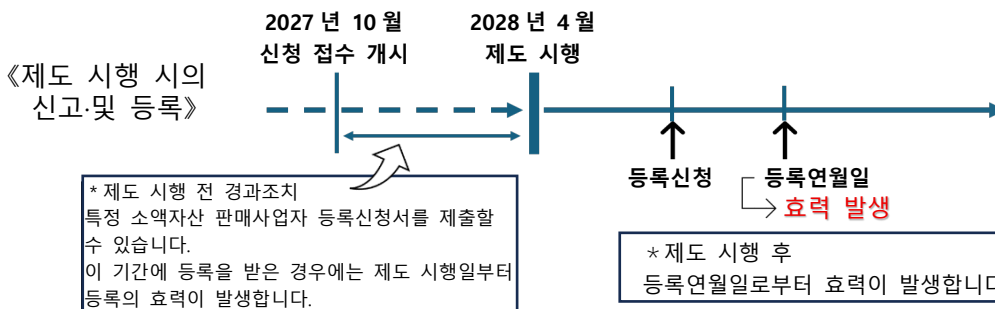
신청서 제출

등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함)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특정 국외사업자	특정 국외사업자 이외의 국외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국외 주소 및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정관 사본, 회사 안내서, 회사 홈페이지 등)	○	○
세무대리권한증서	○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연월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는 2027 년 10 월 1 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8 년 3 월 31 일까지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2028 년 4 월 1 일부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 및 공표

세무서장은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 사항을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공표 사항 >

-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제외함)의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특정 국외사업자 이외의 국외사업자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소, 사업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소재지

● 등록사항 변경 시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는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부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의 효력 및 의무 등

● 등록의 효력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과세화물 중 해당 과세화물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양도하는 특정 소액자산에 해당하며, 수입신고서(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해당 반출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할 사항 >

- 해당 과세화물과 관련된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한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의 등록번호
- 과세화물이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

● 수입 시 과세관계

보세구역에서 과세화물을 반출할 때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 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과 1 만 엔 이하인 물품 중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 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화물 중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양도하는 특정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과세화물을 반출할 때의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 시 소비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Customs Answer([1006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 만 엔 이하인 물품에 대한 면세 적용](#)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의무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산 발송에 관한 매입서 및 그 밖의 서류(전자기록을 포함함)에 다음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고, 해당 특정 소액자산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통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매입서 등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통지사항 >

-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의 등록번호
- 해당 자산이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

● 신고 및 납세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로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 만 엔 이하인 경우에도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할 때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납부하므로, 해당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P5-6 참조).

플랫폼 과세

◆ 개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일본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를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라고 합니다.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외사업자의 일본 국내에서의 자산 양도와 사업자가 행하는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 중, 그 대가를 해당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 및 지정요건

● 신고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 지정신고서”(이하 “지정신고서”라 함)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신고서 제출기한(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2 개월 이내)이 제출기한이 됩니다.

● 지정요건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요건 >

플랫폼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① 및 ②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50 억 엔을 초과할 것

① 국외사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행하는 자산의 양도(이에 부수되는 자산의 양도 등* 을 포함합니다.)

② 사업자가 행하는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

※ 플랫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외사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자산의 운송이나 설치 등 해당 자산의 양도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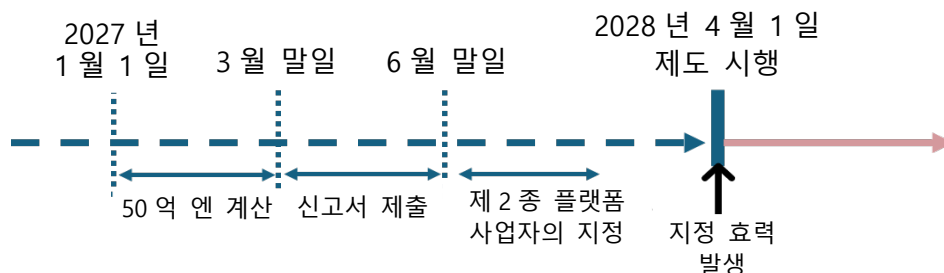
● 지정

국세청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지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해당 지정은 지정신고서의 제출기한(해당 제출기한까지 지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통지를 한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일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도 시행 시의 신고 및 지정(경과조치)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는 (플랫폼 과세에 관한 개정이 2027 년 1 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아) 2027 년 1 월부터 3 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상기 지정요건 ① 및 ②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대가의 합계액에 4 를 곱하여 산정한(연간 환산금액) 금액이 50 억 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7 년 6 월 30 일까지 지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2028 년 4 월 1 일)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표 사항

국세청장은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공표 사항 >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명칭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 지정 효력 발생일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 ▶ 국세청장으로부터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 지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에게 플랫폼 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그 적용일(제 2 종 플랫폼 사업자 지정 효력 발생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플랫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대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플랫폼 과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국외사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행하는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매입 및 해당 국외사업자가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행위 중,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양도에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과세매입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양도에만 필요한 것”이란, 국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과세매입 등을 말하며, 예를 들어 해당 자산과 관련된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납부하는 수입소비세나 해당 자산을 보관하는 일본 국내 창고에서의 하역작업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매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매입을 한 날 또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정 소액자산을 양도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자산을 양도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국외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 2 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쇼핑사이트를 통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사업자 면세점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가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세 과세관계](#)」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A 등 각종 참고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